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7 - 68
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7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사유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지침인 서울시 「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」 추진 계획을 반영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0조제4항 신설)
- 나.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(안 제12조의2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7. 6. 1. ~ 2017. 6. 21. (제출된 의견 없음)
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3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개선의견 없음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1부
- 5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- 6)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증진 활동 촉진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의2제1항 중 “높은 50대”를 “높다고 판단되는”으로, “있다”를 “있으며, 세부 지원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50대 정신건강검진”을 “정신건강검진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자살예방 상담·교육 등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10조(자살예방 상담·교육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구청장은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증진 활동 촉진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2조의2(자살위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) ① 구청장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<u>높은 50대</u>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등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관내 의료기관 중 <u>50대</u>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 및 상담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의2(자살위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) ① ----- ----- <u>높다고 판단되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있으며, 세부 지원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.</u></p> <p>② ----- ----- <u>정신건강검진</u>-----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
일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용을 정신건강검진기관에 지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정신건강검진 지원료 예상비용은 연평균 12,000천원으로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
- 정신건강검진 지원료(1인) : 5만원 × 240명 = 12,000천원(시비 100%)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보건소 의약과 이단비
연 락 처	02-3153-9043